

# 변호인 의견서

사 건

피의자

죄 명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위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 1. 피의사실의 요지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문화재보호법위반

피의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전문매매업자이자 사단법인 고미술협회 감정위원 및 이사를 역임한 자로, 문화재가 도난문화재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자이다.

피의자는 이 사건 목죽도판이 도난당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경 전후 이 사건 목죽도판의 소재 및 소유

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해하여 이를 은닉하고, 목죽도판 ① 판(1/2판)을 수집가 AA에게 선물로 건네주어 도난문화재를 양도하는 등 다음 표와 같이 문화재를 은닉 또는 양도하였다.

문 화 재	범 행
무량수각(無量壽閣) 현판 1점	양도
하려선생문집(3점)·동현학칙(5점)·월연집(1점) 목판 9점, 명륜당수리기 현판 1점	은닉
무량사 목조천불좌상 2점	양도
목죽도판	은닉, 양도

#### 나. 상습장물양도

피의자는 가.항의 문화재들이 각 도난된 문화재로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10. 무량수각 현판 1점을 AA에게 9,000만 원에 양도하는 등 2016. 4. 16.까지 5회에 걸쳐 총 5점의 도난문화재를 AA 및 BB에게 도합 1억 2,800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상습으로 양도하였다.

## 2. 변호인 의견 요지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구속 사유가 없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경찰의 무지 내지 오해, 과도한 수사 열정,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데다가 77세의 고령인 피의자의 낮은 지적 능력, 치매로 인해 실제와는 전혀 다른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서 기재 범죄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거나 판례에 반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의자는 77세의 고령으로 협심증,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구속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9번의 경찰의 출석요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받았고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피의자의 처 ZZ도 뇌경색증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피의자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장물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평생 모은 수십억대의 문화재 792점을 기증하는 등으로 국가에 기여해왔습니다.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 이 사건은 경찰의 문화재에 대한 무지 내지 오해, 과도한 수사 열정,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데다가 77세의 고령인 피의자의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실체와는 전혀 다른 수사 결과가 나왔고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 피의자는 무학(無學)으로 한자를 거의 모릅니다. 많은 분야의 문화재를 취급하다 보니 민속품 이외에는 제대로 아는 분야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문화재에 대한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장물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1) 문화재에는 선사시대부터 수천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학자나 고미술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수십 년간 문화재매매업을 해왔고 고미술협회 감정위원,

협회 이사 등을 해온 점을 두고 문화재분야 전문가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구입하는 문화재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나온 잘못된 판단일 뿐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까지 5,0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석기, 민속품, 토기, 도자기, 회화, 목물(木物), 철물, 가구, 불교 문화재, 민화, 글씨 등 수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문화재만 수십 년 동안 다루어도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안목을 가진 전문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화재매매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가지 분야에 정통한 경우가 가끔 있지만 모든 분야에 정통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중에서 민속품이 전문성을 가지기에 가장 쉽다고 하고 글씨가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미술상으로 오래 일하면 민속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피의자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아서 한자를 거의 모릅니다. 게다가 수많은 분야의 문화재를 취급하다 보니 민속품 이외에는 전문성이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피의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한글을 읽을 줄 알지만 한자는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피의자는 선사시대의 석기부터 일제강점기의 민속품까지 모든 분야의 유물을 취급해왔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MM에 가보면 석기, 민속품, 토기, 도자기, 회화, 목물

(木物), 철물, 가구, 불교 문화재, 민화, 글씨 등 수많은 물건이 창고처럼 쌓여 있습니다. 피의자는 심지어 중국과 일본의 유물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가장 쉬운 민속품만 어느 정도 알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식만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고미술협회 민속품 감정 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경찰은 민속품 감정위원이라면 다른 분야도 어느 정도 알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고미술협회 이사는 주로 오래 이 분야에서 일하면 맡게 되는 것뿐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유물들은 지식이 필요한데 한자를 거의 모르는 피의자로서는 알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피의자는 추사 김정희의 서간이 1장에 500만 원 이상 하는데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10만 원에 판 적도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는 독특하고 가격이 매우 높아서 웬만한 고미술상이나 학자들은 아는 물건입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면 피의자는 동헌학칙 목판 중 4점은 MM에, 1점은 원주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일괄 유물인지 잘 몰라서 따로 보관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피의자가 유물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 3) 피의자는 평생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해본 적이 없고 스마트폰도 쓰지 않아서 도난문화재가 공고되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볼 능력도 없고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유물 중 일부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 사실

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평생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 피의자는 원래 지적능력이 높지 못했는데다가 고령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유물들은 10여 년 전에 입수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따라서 지적능력이 높지 못합니다. 독학으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고령으로 치매 증상도 일부 있습니다. 이 사건 유물들은 10여 년 전에 입수한 것들로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일부러 숨기거나 왜곡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의자에게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4.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서 기재 대부분의 범죄는 판례에 반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 피의자는 이 사건 유물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 목죽도판을 피의자가 취득한 것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 사실이 공고되기 이전입니다. 피의자는 2016년경 DD이 알려줄 때까지 어떤 물건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죽도판은 2010. 7. 20.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장물이라는 사실이 공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CC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서 그 이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DD은 2016년경 피의자에게 “인종대왕 목죽도인데 귀한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를 보면 피의자는 2016년경까지 이 유물이 어떤 것인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유물을 2016. 4. 16. AA에게 무상으로 양도했고, 2016. 4. BB에게는 매매가격으로 800만 원을 제시했으며, 2019. 7. 19. DD, EE에게 매매가격으로 4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보면 피의자가 이 유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물로 취득했고 대단한 물건이라면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판매가격으로 수백만 원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피의자는 이 유물을 다른 유물들과 함께 MM 앞에 세워둔 반닫이 위에 진열했습니다. 경찰에 압수당할 당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유물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장물인 정을 알았다면 그렇게 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2) 무량수각 현판을 취득한 시점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 사실이 공고되기 이전입니다. MM에서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진열해둔 사정을 보아도 피의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유물의 도난 사실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것은 2011. 8. 24.입니다. 피의자가 FF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것은 2009년입니다. 피의자가 AA에게 이

물건을 보여준 것이 2009. 6. 10.입니다. 그 후에 피의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 유물이 도난된 것임을 몰랐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MM에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진열해 놓았습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하려선생 문집 등 목판, 명륜당수리기 현판은 도난문화재로 공고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한자를 읽을 줄 몰라서 문제가 되는 유물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에서 이 유물들이 도난품임을 알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려선생문집, 동현학칙, 월연집 등 목판은 중간 부분에 ‘하려선생집권지 ○○권, 동현학칙권지 ○○권’ 으로 각인되어 있고 명륜당수리기 현판의 경우 향교에서 사용하는 직책이 기재되어 있으며 ‘명륜당(明倫堂)’이라는 명칭은 향교에서만 사용되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려선생문집, 월연집 목판, 명륜당수리기 현판, 무량사 목조천불좌상 2점은 지금까지 도난 공고가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자를 거의 모르는 피의자가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읽어서 그 의미를 알고 그 유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나. 판례에 비추어 피의자의 행위는 문화재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대전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요지

법원은 이 판결에서는 문화재의 본래적 성격상 사유재산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지만 그 제한의 범위는 문화재의 가치에 상응하여 달리 설정되어야 하고, 구 문화재보호법(2007.4.11.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를 구별하여 그 관리와 보호 등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매매업자에게 장부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재를 일반인 또는 문화재청이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구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원형보존)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 이라 함은 ‘일반인 또는 문화재청 등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라고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당해 문화재를 지하 깊은 곳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동품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취득한 일반동산문화재를 그 원형을 보존한 채 판매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진열하거나 금고 등에 넣어 둔 것이, 구 문화재보호법(2007.4.11.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손님인 참고인 몇 명이 목죽도판을 MM에서 보지 못했으니 피의자가 이를 은닉한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은닉했다는 주장자체가 없습니다. 목죽도판 중 현재까지 찾지 못하는 부분은 피의자가 은닉한 것이 아닙니다.

목죽도판 중 ①판(1/2판)은 MM 바깥에 있던 반단이에서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다가 2016. 4. 16. 경 AA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③판은 MM 바깥에 있던 반단이에서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다가 BB에게 판매했다가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목죽도판 ①, ③판 각 1/2 조각은 2019. 7. 15. 경찰 및 문화재청 직원들에 의해 MM 바깥에 있던 반단이 위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2016년 이전에는 MM에서 보지 못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가 다른 곳에서 은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근거도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MM은 문화재 매매상 중에서도 매우 물건이 많고 유물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로서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서도 “보관상황을 보면 유물 위에 유물을 올려 놓는다거나, 선반위, 고가구 내, 그리고 고가구 위, 업소 바닥에 널려져 있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특정 유물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문화재를 주로 매매한 ‘MM’ 영업장의 경우에도, ‘매매장부, 유물목록, 유물카드, 유물출납장, 유물명 또는 유물설명 등’ 없이 영업장 내 ‘선반위, 고가구 內, 고가구 위, 영업장 바닥’ 에 마구잡이 쌓아두어 업소 내부를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이곳에서 발견된 이 건 ‘하려선생문집 권지10’ 목판 1점에는 곰팡이가 생겨 문화재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 오지도 않은 참고인들이 MM에서 유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은닉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심각한 논리비약입니다. 피의자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은닉을 했다는 주장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피의자가 만일 은닉하려고 했다면 MM 앞 반닫이 위에 두었다가 경찰에 의해 압수당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곳은 가게 바깥이어서 가게에 들어오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은 미회수된 목죽도판 중 1/2 조각을 피의자가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과 다릅니다. 피의자가 애초에 받은 목죽도판은 모두 현재 경찰에 압수되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현재 이것만 은닉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3) 하려선생 문집 등 목판, 명륜당수리기 현판 중 대부분은 MM 및 피의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판례에 따르면 ‘은닉’ 한 것이 아닙니다.

위 유물들 중 목판(동현학칙 권지 2, 3, 4, 6 등 4점, 하려선생문집 3점, 월연집 1점) 등 8점은 MM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판(동현학칙 권지3) 1점, 명륜당수리기 1점만이 피의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MM에서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이 ‘은닉’에 해당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는 피의자가 모든 물건을 MM에 보관할 수 없어서 10여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동현학칙 목판 중 하나를 별도로 은닉할 이유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창고에 둔 행위를 두고 은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 피의자에게 장물 양도의 ‘상습성’이 없어서 양도 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장물범죄에 있어서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피의자에게는 장물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표창만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보면 법원은 장물죄에 있어서 상습성 인정에 전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는 장물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의자는 경찰청장 등 국가로부터 많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① 1995. 11. 경찰박물관 설치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증 제1호 경찰청장 감사패(1995. 11. 8.)], ② 1998. 10.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증 제2호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1998. 10. 21.)], ③ 2002. 10. 강원경찰박물관 건립·개관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증 제3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감사패(2002. 10.

17.)].

또, 피의자는 2009년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재를 기증하여 감사패를 받았습  
니다[증 제4호 국립중앙박물관장 감사패(2009. 3. 30.)]. 2016. 3.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로부터 문화유산의 전승보급관리에 헌신적인 노력 등을 한 공로로 표창  
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증 제5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창장(2016. 3.  
17.)].

이런 피의자에게 문화재에 대한 장물양도의 상습성이 있다는 경찰 주장은 황당하  
기까지 합니다.

3) 아무런 전과가 없고, 7년 동안 약 7,000점을 매매한 피의자가 3~4년에 한번씩 총  
5회에 걸쳐 양도한 행위를 두고 장물양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지나친 논  
리비약입니다.

피의자는 석기, 민속품, 토기, 도자기, 회화, 목물, 철물, 가구, 불교 문화재, 민  
화, 글씨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골동품을 취급하며 1점에 몇 만원짜리부터 몇  
천만 원짜리까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의 물건까지 취급하기 때문에 하루  
에 2~3점 이상의 골동품을 판매합니다. 적게 잡아도 1년이면 1,000점 정도, 7년  
이면 7,000점 정도를 매매합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피의자의 하나  
은행 주 거래계좌 거래내역에서 변호사, 개인, 의사, 스님 등 다양한 직종의 불  
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 백만원~수 천만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되는 점을 볼  
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09년 1회, 2013년 2회, 2016년 2회 양도한 것을 두고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000점을 매매하는 동안 3, 4년만에 한 번씩 5회에 걸쳐서 양도한 행위를 두고 상습성이 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입니다.

무량수각 양도 시기는 2009. 6. 10, 무량사 목조천불좌상의 양도시기는 2013. 2. 7. 및 같은 해 3. 16.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행위까지 엮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 5. 피의자는 국가에 수십억 대의 문화재를 기증하였고, 국가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2004. 9. 국립중앙박물관에 평생 모은 수십억대의 문화재 792점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증 제6호 중앙일보 2004. 9. 3.자 기사, 증 제7호 조선일보 기사, 증 제8호 매일경제 기사, 증 제9호 경향신문 기사). 또한 피의자는 2009년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재를 기증하여 감사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증 제10호 국립중앙박물관장 기증문화재수납서(2009. 3. 16.)]. 국립중앙박물관 2층 기증관에는 피의자가 기증한 유물들이 상시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피의자는 1995. 11. 경찰청장 감사패, 1998. 10.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2002. 10. 강원도지방경찰청장 감사패, 2016. 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평생 모은 문화재를 아무런 조건없이 국가에 기증했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6. 피의자는 고령에다가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구속 집행을 견뎌 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77세의 고령으로서, 스텐트를 이용한 경피 경관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협심증,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심근경색증, 위식도역류 등 수많은 질환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증 제11호 최진내과의원 진단서, 증 제12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진단서).

이뿐만이 아니라 피의자는 서혜부 탈장으로 인하여 의사로부터 수술받을 것을 권고받기까지 한 상태입니다(증 제13호 기쁨병원 진단서).

따라서 피의자는 육체적으로 도저히 구속 집행을 견뎌 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7. 피의자의 처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서 피의자의 간병이 절실하게 필요하는 등 피의자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배우자인 ZZ이 현재 뇌경색증과 안면마비를 앓고 있습니다[증 제14호 한양대학교병원 진단서(ZZ)]. 피의자는 배우자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현재 수입이 크게 줄고 아들의 파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간병인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YY, XX이라는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각 아들과 딸을 1명씩 두고 있습니다. 현재 YY은 원주, XX은 익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8. 피의자는 경찰의 9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100%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받았고 1년을 넘게 진행한 수사로 증거는 이미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했습니다.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오래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수사에 1년이 넘는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그 동안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앞으로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만일 기소된다면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할 것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 9. 결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 화 재	범 행	변호인 의견
무량수각(無量壽閣) 현판 1점	양도	전과 없고 3, 4년에 한 번 정도의 양도에 불과, 상승성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도과. 한자를 거의 모르는 등 지식이 짧고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장물인지 몰랐음
하려선생문집(3점) · 동헌학칙(5점) · 월연집(1점) 목판 9점, 명륜당수리기 현판 1점	은닉	10점 중 8점은 MM에서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고 나머지 2점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판례에 따른 ‘은닉’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무량사 목조천불좌상 2점	양도	전과 없고 3, 4년에 한 번 정도의 양도에 불과, 상승성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도과. 도난품인지 공지되지 않았고 한자를 거의 모르는 등 지식이 짧아서 장물인지 몰랐음
목죽도판	은닉	MM 앞에 둔 반닫이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양도 및 압수되었으며 은닉한 바 없음. CC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을 때 4점이 아닌 3점이었고 현재 경찰이 모두 압수했음 한자를 거의 모르는 등 지식이 짧고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장물인지 몰랐음 제 가치를 알았다면 그 중 일부를 AA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을 것이고 DD에게 매매가격 400만 원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임.
목죽도판	양도	한자를 거의 모르는 등 지식이 짧고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장물인지 몰랐음. 제 가치를 알았다면 그 중 일부를 AA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을 것이고 DD에게 매매가격 400만 원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임.

이처럼 이번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경찰의 문화재에 대한 무지 내지 오해, 과도한 수사에 대한 열정,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데다가 77세의 고령인 피의자의 낮은 지적 능력 등이 결합되어 실체와는 전혀 다른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구속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9번의 경찰의 출석요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받았고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피의자의 처 ZZ도 뇌경색증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피의자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장물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평생 모은 수십억대의 문화재 792점을 기증하는 등으로 국가에 기여해왔습니다.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표창을 받았 습니다.

만일 이번에 구속되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 니다.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 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는 한자도 모르는 등 지식도 없으면서 골동 품 매매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이고 고미술품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적고 경기가 나빠서 앞으로 문화매매업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날까지 더욱 더 조심하여 이런 일이 없도 록 할 것을 맹세합니다.

## 참 고 자 료

- 1. 증 제1호      경찰청장 감사패(1995. 11. 8.)
- 1. 증 제2호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1998. 10. 21.)
- 1. 증 제3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감사패(2002. 10. 17.)

- 1. 증 제4호      국립중앙박물관장 감사패(2009. 3. 30.)
- 1. 증 제5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창장(2016. 3. 17.)
- 1. 증 제6호      중앙일보 2004. 9. 3.자 기사
- 1. 증 제7호      조선일보 기사
- 1. 증 제8호      매일경제 기사
- 1. 증 제9호      경향신문 기사
- 1. 증 제10호     국립중앙박물관장 기증문화재수납서(2009. 3. 16.)
- 1. 증 제11호     최진내과의원 진단서
- 1. 증 제12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진단서
- 1. 증 제13호     기쁨병원 진단서
- 1. 증 제14호     한양대학교병원 진단서(ZZ)

2020. 10. .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구 본 진

담당변호사 최 중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